

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

더 청렴한 공단
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
국민건강보험공단 소문과 대문
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

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.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
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(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)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분들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>

- 치료 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- 다름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-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

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



관심은 학대 예방의 지름길입니다.

또한 노인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(☎1577-1389) 또는 수사기관(☎112),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9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